

##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사회단체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 안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써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 장소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장,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수난구조요원”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6. “수변안전요원”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 제2장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시장의 명을 받아 관할 소방본부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

의하여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당해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갖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영구역 표시
2.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3.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4. 순찰차량
5. 통신 및 방송시설
6.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6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기타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제7조(복제)** ① 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표식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소방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한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
3. 기타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장 수상구조대원의 모집·교육훈련

**제9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라. 기타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2. 수변안전요원

가. 사회단체 회원

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마. 기타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모집·선발)** ① 소방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 계획에 따라 매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소방본부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임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장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급 등

제12조(활동실비 등) 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치료와 보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치료·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1조 등을 위반한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시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신고포상금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위 대상 중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① 만 19세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한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5일 이내에 현장 확인 후 별지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신고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즉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소재지 소방관서로 이첩해야 한다.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다른 사람(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소방관서의 조치가 이행 중인 신고의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 상당으로 적의 지급한다.

③ 같은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건수는 월 2건,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거나 가족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본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7조(처리결과에의 통지)** ①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등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등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시장은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포상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한다.

**제9조(포상심의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등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신고포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이 되며,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신고사항의 소방관계 법령 위반여부, 신고포상금 등 지급

대상자 및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포 상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확 인 및 처 리 사 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범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업 종)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

### 1. 포상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의뢰기관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등 지급기준			

###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별지 제5호 서식>

## 제 ○ 차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석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원	서 명

## 세종특별자치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및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중화, 희석 또는 환경처리 업체에서 수거하게 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① 지정수량의 5분의1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및 전용 부스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잘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IV 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5.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하여야 한다.
16.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당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17.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8.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3항제4호타목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또는 동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19.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8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별표 6의 I·II·VI의 제17호)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된 실에서 하여야 한다.

가.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나.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불에 직접 닿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당해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기타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9.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액체 또는 불연성기체를 사용하여 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여 누설, 기타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나.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다. 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기타 위험

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안에 위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당해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13.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당해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소량위험물을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의 탱크[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별표 1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중수시험을, 압력 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의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지하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라목 내

지 바목 및 차목의 규정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하여야 한다.

바. 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당해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동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이어야 한다.

다.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바.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샴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아.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제품명(통칭명)과 타목의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 이라고 표시한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의 사각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타.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조 내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내지 제3조제4항(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국제해상 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에 한한다)에 한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있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국제해상 위험물규칙」(IMDG G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당해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한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별표 2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당해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제조소 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과 휴대용확성기를 비치할 것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준의 특례)** 제3조(제4항을 제외한다) 및 제4조의 규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당해 각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당해 각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7호 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제4조 별표 2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사람
2.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탱크의 용량	관의 두께
40리터 이하	1.0밀리미터 이상
4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1.2밀리미터 이상
100리터 초과 250리터 이하	1.6밀리미터 이상
2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2.0밀리미터 이상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2.3밀리미터 이상
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	2.6밀리미터 이상
2,000리터 초과	3.2밀리미터 이상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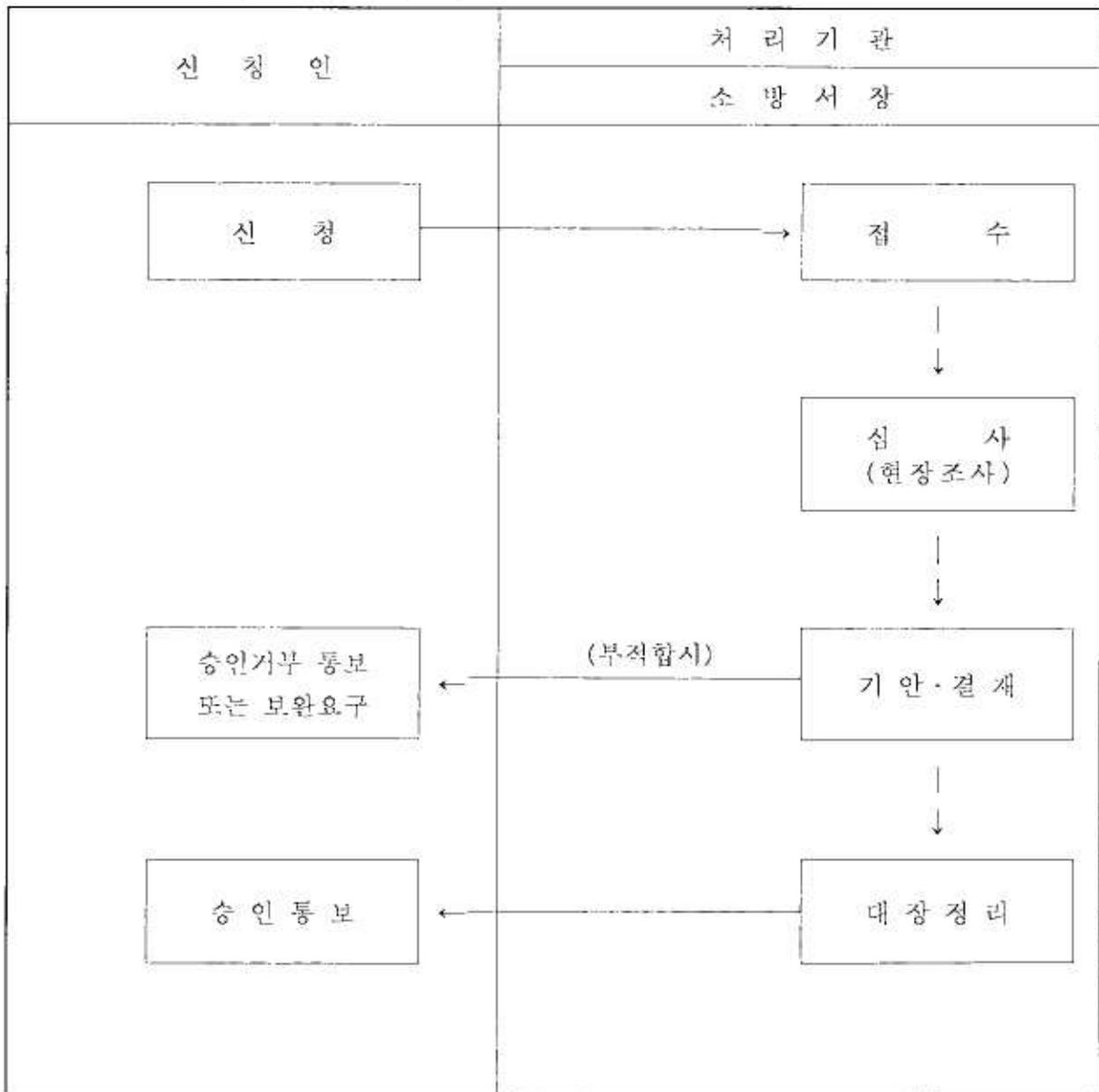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미터 이상

<b>위험물 임시저장 · 취급 승인신청서</b>				처리기간	
				5 일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설 치 장 소					
설치장소의 지역별			방화지구 여부	용도지역등	
시설의 구분					
위험물의 유별 · 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 량			지정수량의 배수		배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개요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방법의 개요					
소화설비 개요					
작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p>「세종특별자치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 저장 · 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_____ (전화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_____ 서명(인)</p>					
<p>「세종특별자치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 저장 · 취급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세종특별자치시장(○ ○ 소방본부장)</p>					
※ 접 수 란		※ 경 과 란		※ 수 수료란	
접수 연월일 : 접 수 번 호 :		승인 연월일 : 승 인 번 호 :		2만원	

(뒤 쪽)

-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2. 용도지역등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기재한다.
3. 시설의 구분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제조소등의 구분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4.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한다.
5. ※표시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에서 제39조의2까지 정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소대”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된 모든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2. “남성대”란 남성으로 구성된 남성의용소방대를 말한다.
3. “여성대”란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의용소방대를 말한다.
4. “지역대”란 남성대 또는 여성대 산하에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는 지역의용소방대를 말한다.
5. “전문의소대”란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대원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6. “전담의소대”란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도록 지정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7. “대원”이란 의용소방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의소대를 설치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남성대는 읍·면·동별(「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의 동지역을 말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3호까지 같다)로 설치할 수 있다.
2. 여성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읍·면·동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3. 동지역에는 도시의 형태 등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119안전센터 또는 행정동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소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전문의소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의소대를 전담의소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의소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전문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소대의 표지)** ① 의소대별 기와 표지를 가질 수 있다.

② 기는 의소대의 사무실에 두며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③ 의소대의 표지와 현판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6조(조직)** ① 남성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과 일반대원을 둔다.

② 지역대에는 지역대장 1명, 부장·반장과 일반대원을 둔다.

③ 남성대, 여성대와 전문의소대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정원)** 의소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소방 여건을 고려하여 대별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읍지역 : 남성대 60명, 여성대 50명

2. 면지역 및 제3조 제1항 3호의 경우 :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3. 전문의소대 및 지역대 : 20명

**제8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은 소방본부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9조(업무분장)** ① 남성대에는 총무부·방호부·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재난대응반·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현장관리반을 두며, 부와 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 ② 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과 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과 구호반을 두며, 부와 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 ③ 지역대에는 방호부와 지도부를 두며, 업무분장은 별표 3의 방호부와 지도부의 업무분장에 따른다.
- ④ 부와 반의 조직 구성 및 정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전문의소대의 부와 반의 편제는 지역특성 및 의소대별 임무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임명)** ① 대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 ② 대장, 부대장과 지역대장은 소방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대장, 지역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부장이하 대원은 대장, 지역대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 제3장 임용

- 제11조(임명기준)** ① 대원은 그 의소대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2.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을 보유한 사람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와 제11조에 따른 자격자
- ② 제2조제5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

2. 산악·수상구조,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등 분야 자격
3. 정보통신분야 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5. 견인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6.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7.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소방활동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임명 구비 서류)** ① 대원의 임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대지원자의 주소지 확인은 임명권자가 한다.

1. 입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이력서(별지 제10호 서식) 1통
  3. 제11조에 따른 소방 관련 자격증(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3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과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적대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임하는 대장과 지역대장은 대원들의 찬성현황을 표기하여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임대상자는 소방본부장이 대원들의 동의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정년)** ①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② 제13조에 따른 대장과 지역대장의 임기 만료일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일이 그해 1월에서 6월까지에 있으면 6월에, 7월에서 12월에 있으면 12월에 각각 퇴임한다.

**제15조(해임)** ① 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부장 이하의 대원에 대한 해임 권한은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분쟁을 일으켜 의소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경우와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20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의 해임은 소방본부장의 해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제16조(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 ① 시장은 대장·부대장과 지역대장을 포함한 전 대원에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시장은 신분증명서의 발급과 회수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임중인 대원 또는 퇴임한 대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④ 대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업무수행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7조(고문의 위촉)**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그 의소대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연합회장 또는 연합회 여성회장이 제3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의소대의 대장직을 사임한 때에는 그 의소대의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전담의소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장의 동의를 얻어 퇴직 소방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제11조에 불구하고 그 전담의소대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자문위원의 임명기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전담의소대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 제19조(복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복무하되,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교육훈련과 홍보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이라 한다)을 인지 또는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대원은 화재취약 시기와 경계근무기간 등에 시장의 출동대기근무 명령이 있는 때에는 소방관서 등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③ 전담의소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장비운영자로 지정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원들의 옥내진입을 억제하면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대응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 ④ 전담의소대원의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전담의소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소요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의 모금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의소대 또는 다른 단체의 분쟁과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의소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21조(표창)** ① 시장은 매년 소방의 날 등에 유공이 있는 대원들을 표창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장과 지역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하는 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대원으로 재직 중 시장 표창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로패 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할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지역대장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대장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대원
4. 위 재직기간의 산정에는 타 시·도 의소대원 경력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경력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복제)** ① 시장은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복 및 활동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 등 : 제복(정복, 기동복, 조끼, 방한복), 모자(정모, 기동모), 부착물(직위표장, 모자표장, 지휘장, 소매표장, 뺨지, 직위표, 가슴표장), 부착물(넥타이, 넥타이핀, 요대 및 버클, 금장단추, 이름표, 등판표시), 단화, 기동화 등

2. 활동복 : 티셔츠, 우의, 운동복 등

③ 지급품의 지급대상과 사용기간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복 등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급품은 주문·제작하여 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복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다.

⑥ 단화 및 기동화의 형상·제식 및 재질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의한 기준에 따르고, 제복·모자·부착물·부속물 및 활동복의 형상·제식 및 재질과 부착물의 부착위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복무감독 및 검열)** ① 시장은 모든 대원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소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

**제25조(교육 및 훈련)** ① 대원은 소방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장(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을 말한다)이 실시하는 의소대 관련 교육훈련을 매년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학교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대장 및 지역대장에 대하여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의소대원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대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대원별 교육훈련 이수상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시장은 대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 제5장 경비, 수당 및 보상금

**제26조(기본경비)** ①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등 의소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② 시에서는 그 밖에 의소대의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담의소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출동 수당) ① 시장은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화재·산불진압활동은 1회 1시간 이상, 그 밖의 소방 및 재난업무 등 활동(제28조제2항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은 1회 4시간 이상 활동하는 대원에게 지급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월액을 40으로 나눈 금액(백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동대기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출동수당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백원미만은 절사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활동비 보조 등) ① 시장은 의소대의 소방 활동과 지역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방활동과 지역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산불예방 및 진압활동
2. 대원의 회의참석 및 교육훈련
3. 소방기술경연 및 산업시찰
4.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및 봉사활동

제29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 보상
2. 장애 보상
3. 장제 보상
4. 유족 보상

제30조(요양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

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찰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이하 이 조에서 “치료비”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치료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5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장애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2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9호봉의 봉급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

**제33조(유족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소방사 9호봉 봉급액의 10년분을 지급하고, 제1항과 관련된 그 밖의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화재진압(산불진압을 포함한다), 구조·구급에 관한 활동
2. 제1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활동

**제34조(유족 우선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등분하여 지급

한다. 다만,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을,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제35조(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 정한 보상은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까지 서식에 따라 재해를 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2. 보상금을 받은 후 그 보상금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이 과오급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는 환수금을 납부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6조(의용소방대 연합회)** ① 각 의소대는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각 남·여 대장을 회원으로 하며, 그 연합회를 대표하는 연합회장과 연합회의 여성회원을 대표하는 여성회장을 둔다.

③ 제2항의 연합회장은 그 연합회 전체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연합회 여성회장은 그 연합회 여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연합회장 또는 연합회여성회장은 연합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의소대의 대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연합회장 또는 연합회 여성회장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연합회장 또는 연합회 여성회장이 해당 의소대의 대장직을 사임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소방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새로 대장을 임명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되는 대장의 임기는 제13조제1항과 같다.

⑥ 그 밖에 연합회 임원 등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37조(연합회장의 임무)** 연합회장과 연합회 여성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의소대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연합회 경비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의한 지역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성과중심 보상)** ①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효율적 성과중심 보상·관리를 위해 연합회장 및 연합회 여성회장의 의견을 들어 보상·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정보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의용소방대 기(제5조제2항 관련)

(1) 도 안



(2) 기

- 규격 : 기 ..... 가로 110cm, 세로 75cm  
    휘장 ..... 가로 65cm, 세로 31cm  
    수실 ..... 길이 8cm
- 색상 : 바탕 ..... 진청색  
    휘장 ..... 황금색  
    수실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지질 : 우단
-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 처리한다.

(3) 깃 받

- 규격 : 무궁화깃봉 ..... 지름 6cm  
    깃대 ..... 길이 180cm, 직경 2.5cm
- 재료 :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받침대 ..... 철재

【별표 2】

의용소방대표지(제5조제3항 관련)

(1) 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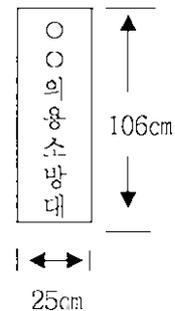
(2) 규격

- 새 매 의 크 기 : 가로 90cm, 세로 58cm
- 횃 불 의 크 기 : 가로 9.3cm, 세로 14cm
- 태 양 의 크 기 : 원외경 37cm
- 소방호스 의 길 이 : 길이 43cm

(3) 재 질 : 동판(구리65%+아연35% 내외로 적절히 합금)

현 판

- (1) 두께 : 3cm
- (2) 지질 : 목재
- (3) 색 : 판 - 담홍색, 글씨 - 흑색



【별표 3】

남성대의 업무분장표(제9조제1항 관련)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 무 부	서 무 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 급 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 호 부	재난대응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조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 도 부	예 방 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훈 련 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대의 교육에 관한 사항
	현장관리반	1. 소방활동 현장 통제에 관한 사항 2. 소방활동 현장에서의 주민홍보 및 협조 3.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별표 4】

여성대의 업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홍 보 부	서 무 반	1. 대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홍 보 반	1. 관할 구역내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구 호 부	구 급 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응급조치
	구 호 반	1. 이재민 위안활동 2. 이재민 가료조치

【별표 5】

전담의용소방대 보유 시설·장비 기준표(제19조제5항 관련)

1. 소방청사 : 소방장비를 보관,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회의실 기능을 갖춘 규모의 건축물
2. 필수보유 소방장비

구분	종류	보유기준	사용기간
기동장비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설비와 불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	기존차량	8년
진압장비	수동식 소화기(3.3Kg이상)	차량 적제품	
	소방호스(40mm / 65mm)	(10/5)본 이상	
	관창, 결합금속구 등	3개 이상	
구조장비	사다리	1개 이상	
보호장비	공기호흡기	3착 이상	15년 (면제 3년)
	방화복	3착 이상	3년
	헬멧	3착 이상	5년
	안전화, 장갑 등	3착 이상	3년

※ 위의 소방(진압·보호)장비는 차량 적제기준이며,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1)의 소방장비를 추가배치 할 수 있다.

【별표 6】

의용소방대원 복제지급 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종 류		지급대상	수 량	사용 기간	비 고
정 복	동복	지역대장이상	1	3	정복착용시 - 남자 : 흰색 와이셔츠 - 여자 : 살구색 스타킹
	하복	지역대장이상	1	3	
제 기동복	동복	전의용소방대원	1	2	-신규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하복	전의용소방대원	1	2	
복	조 끼	전의용소방대원	1	2	
	방한복	전의용소방대원	1	3	
	활동복	전의용소방대원	1	3	
모 자	정 모	지역대장이상	1	3	
	기동모	전의용소방대원	1	2	- 신규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단 화	전의용소방대원	1	2		
기동화	전의용소방대원	1	3		

【별표 7】

신체장애의 등급 및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제31조제2항 관련)

가. 신체장애 등급표

등급	신 체 장애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li> <li>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li> </ol>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li> <li>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li> <li>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li> </ol>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li> <li>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6.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li> <li>7. 한 팔의 3대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9.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li> <li>10.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li> <li>11.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ol>

등급	신 체 장 애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눈이 실명(맹·광각상실)되거나 또는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li> <li>2. 두 귀의 청력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li> <li>7. 한 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사람</li> <li>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li> <li>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li> <li>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li> <li>11.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li>12.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li> <li>13.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li> <li>14.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li> <li>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li> <li>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li> <li>17.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li> </ol>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li> <li>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li> <li>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li> <li>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li> <li>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li> <li>7. 두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기 어려운 사람</li> <li>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li> </ol>

등급	신 체 장 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li> <li>11.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li> <li>12. 한 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사람</li> <li>13.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14.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li> <li>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li> <li>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li> <li>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li> <li>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li> <li>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li> <li>9. <u>7개</u>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li> <li>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u>발가락 2개</u>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li> <li>11. 흉복부·장기의 <u>기능에</u> 장애가 남은 사람</li> <li>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li> <li>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li> <li>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li> <li>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u>4개</u>를 못 쓰게 된 사람</li> <li>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li> <li>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li> </ul>

등급	신 체 장 애
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li> <li>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li> <li>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li> <li>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li> <li>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li> <li>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li> <li>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li> <li>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li> <li>10. 한 발의 가운데·넋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li> <li>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넋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li> <li>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써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li> </ol>
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li> <li>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li> <li>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li> <li>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li> <li>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li> <li>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li> <li>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li> <li>8. 한 발의 가운데·넋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li> <li>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li> <li>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써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li> </ol>

비고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대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나. 신체장애 등급별 장애보상금 지급기준표

등 급	보 상 금
1 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100/100
2 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88/100
3 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76/100
4 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64/100
5 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52/100
6 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40/100
7 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20/100
8 급	유족보상금 최고액의 20/100

【별표 8】

사망대원 유족보상금 지급 기준표(제33조제2항 관련)

근 무 년 수	보 상 금
10년 이상	지방소방사 16호봉 봉급액의 10년분
8년 이상 10년 미만	지방소방사 16호봉 봉급액의 9년분
6년 이상 8년 미만	지방소방사 16호봉 봉급액의 8년분
6년 미만	지방소방사 16호봉 봉급액의 7년분

【별지 제1호 서식】

입 대 원 서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 · 녀

위 본인은 소방본부( 읍 · 면) 의용소방대원으로  
복무하고자 입대를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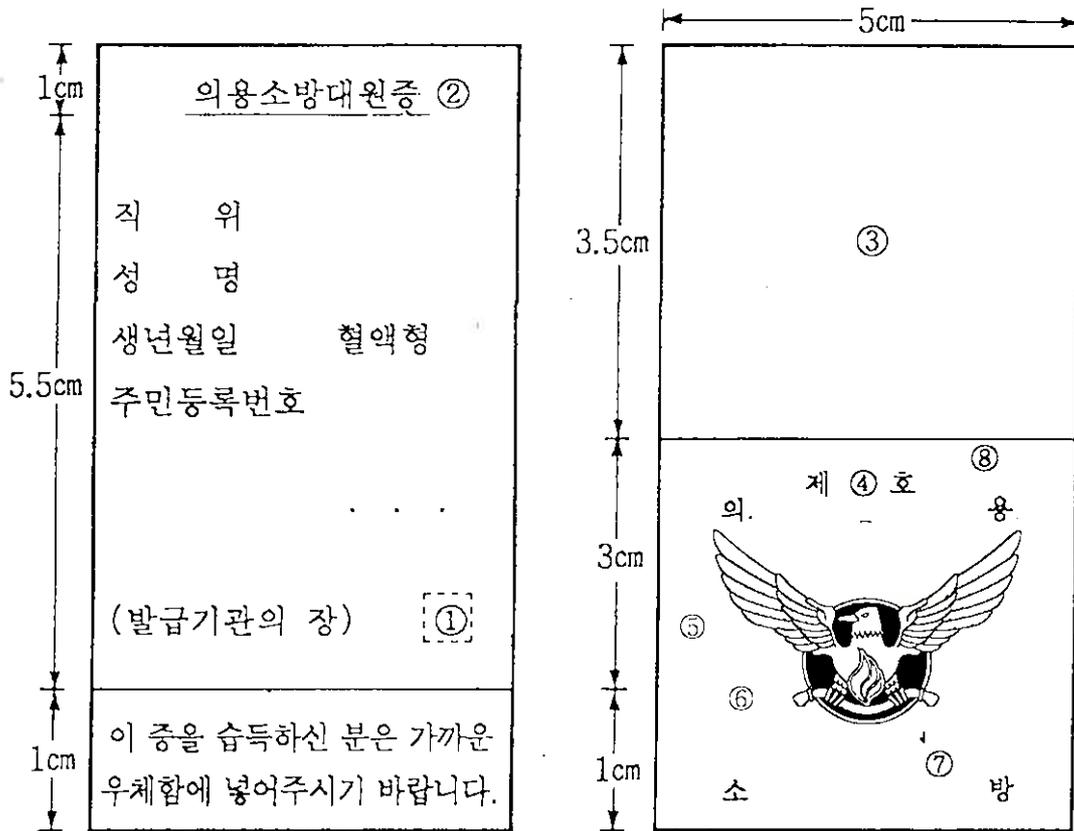
추 천 인	직	성명
-------	---	----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장 귀하

(신문용지 190cm×268cm)

【별지 제2호 서식】

신 분 증 명 서



( 전 면 )

( 후 면 )

① 발급기관의 장 및 직인

② 계 인

③ 사진(5cm×3.5cm)

④ 신분증번호

⑤ 소속(○○의용소방대)

⑥ 성 명

⑦ 발급기관명(소방서단위)

※ ④⑤⑥⑦은 흑색 모필로 기재

구 분	내 용	도 형
지 질	<p>신분증의 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지질은 인쇄용지 190g/m<sup>2</sup>으로 한다.</p>	
제 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cm×세로 7.5cm로 한다.</li> <li>2. 후면 사진첨부란 밑 전면에 1.5mm의 얇은 연두색 문자로 “대한민국 의용소방”을 중앙부분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모표”를 인쇄한다.</li> <li>3. 후면 사진첨부란 밑의 모서리에 녹색으로 “의용소방”을 인쇄한다.(글씨크기 가로 0.8cm×세로 5cm×굵기 1mm)</li> <li>4.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는 가로 5cm×세로 3.5cm로 한다.</li> <li>5. 신분증은 피·브이·씨 또는 비닐지로 완전 밀착 포장하여 발급한다.</li> </ol>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분증의 분실, 오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li> <li>2. 의용소방대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li> </ol>	



【별지 제4호 서식】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소 속	직 책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년 월		최종직책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요양보상청구서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상병의 부위와 정도			
4. 상병의 결과					
5. 요양의 내용					
6. 소요요양비 내용			합계		원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 또는 진료소 명칭					
직		성명		(인)	
<hr/>					
1.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2. 상병명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인)			
<hr/>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